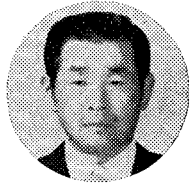


輸入自由化와 外國商標使用



孫 海 雲
<辨 理 士>

本稿에서는 輸入自由化 및 外國商標導入의 必要性이나 長點에 대하여는 論하지 않겠다. 다만 筆者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또는 經驗한 바에 따라 생각나는 問題點과 이에 관한 意見을 提示코자 한다.

① 輸入自由化에 따른 外國商標의 國內市場 進出과 그 問題點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 日本에서도 一般的으로 國民들가운데는 外國으로부터의 輸入品을 自國產品보다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商人들중에는 어떤 商品이 마치 外製인 것처럼 假裝하거나 外國냄새를 풍기게 하여 外製를 좋아하는 需要者의 口味에 맞추기 위하여, 좀 심한 경우에는 需要者들을 欺瞞하고 私利私慾을 채우기 위하여 外國語商標를 使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政府가 一部 商品에 대한 輸入自由化를 發表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輸入自由化政策에 따라서 輸入商品에 表示되어 있는 外國商標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問題點을 낳게 할 것인지 한번 考察해보기로 한다.

(1) 外國상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國內著名商標가 現在까지 우리나라 市場에서 어떤 位置에 놓여 있는가 하는 實情부터 먼저 檢討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筆者가 直接 取扱해보았거나 듣고 본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D市場, P市

場, C市場등에서 商標權侵害로 告發되거나 警告를 當하는 많은 商人들의 경우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라벨製造業者(거의 모두가 零細業者임)가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誘惑하기 때문에 그들 라벨商人의 倂입에 속아서 또는 商標法이나 不正競爭防止法에 대한 無知의 所致로 그들 라벨상인들의 말을 믿고 그들 라벨상인이 販賣하는 상표를 商品에 使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 상인이 사용한 他人의 登錄商標내지 著名商標의 數量은 極少量인데 比하여 他人의 상표를 사용한 상인의 數는 많고 또 그 使用期間이 比較的 짧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部分의 大企業體인 商標權者가 零細商人들인 이들 商標權侵害者들을 當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매우 輕微한 處罰(例컨데 5萬원이하의 罰金刑) 또는 大概의 경우 訓放措置해 버리거나 때로는 告發者가 오히려 대기업의 橫暴로 誤解받아 곤욕을 치르게 되는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商標權者들은 自己의 商標權의 正當한 行使마저 斷念해버리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많은 상인들은 商標權侵害行爲를 別로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껏 要領껏 가끔 犯하고 있어 아직도 이들 零細商人들에 의한 商標權侵害行爲는 좀처럼 根絶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輸出品(이른바 保稅品 包含)에 사용하고 남은 상표나 輸出不良品에 該當하는 各種 外國語表示의 상표라벨이 시장에 流出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들 영세상인의 大部分은 거의가 合法的이고 正當한 사용으로 誤認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가 있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는 保稅品の 부음이 最高潮에 達하고 있는 느낌마저 있다. 그리하여 많은 수요자들이 保稅品市場에 물리고 있으며 여기서는 外國語商標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 보세품에는 國內著名商品도 많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이 外國의 저명상표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外國상표가 붙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직도 相當한 數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상표권침해행위나 상표에 관한 其他 不正競争防止法違反行爲 등은 親告罪가 아니므로 當局의 特別한 團束이 없는 限 이와같은 犯法行爲는 增加一路에 있어 거의 無防備狀態에 놓여 있다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셋째로, 市場商人의 要請에 의하여 라벨製造業者가 타인의 상표와 同一 또는 類似한 상표를 제조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상표의 使用人이 그 상품의 原料出處表示를 잘못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不故意的인 행위와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또는 一部 變造하는 故意的인 행위의 두가지가 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一般的으로 事前에 警告措置를 行하거나 告發措置를 위한 證據의 事前入手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경고를 받은 直後 證據를 完全히 煙滅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어 商標權者의 權利行使가 사전에 挫折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 또 前者의 경우나 後者의 경우 증거를 사전에 入手하고자 하여도 상인들의 눈치가 빨라서 좀처럼 증거를 入手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證據入手 後에는 殘品一切가 行方不明이 되어버리기가 일수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같은 故意的 權利侵害者들은 法에 대하여 알것은 다 알고 있으며 法的 盲點을 最大限으로 이용할 줄 아는 者가 많다.

(2) 이와같은 國內與件下에 輸入自內化가 행하여지고 따라서 各種 外國상표가 표시된 많은 輸入品이 國內市場에 出現하게 되면 어떠한가 推測해 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上述한 바와같은 與件下에서는 수입품에 표시된 外國상표

가 國內市場에서 氾濫하게 될 것이라는 杞憂가 앞서게 된다. 수입품이라하여 반드시 國산품보다 優秀하다고는 볼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은 國산품에 比하여 우수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만약 國產品에 비하여 보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거의 遜色이 없거나 또는 價格面에서 보다 有利하다고 하여도 惡德商人들은 國산품에 수입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여 수요자를 欺瞞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 憂慮된다.

오히려 低質國產品에 대하여 수입품의 外國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不正商標가 사용된다면 수요자는 한번 속아도 두번은 속지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不信感때문에 輸入品自體에 대한 一般의 購買力이 減退내지 不在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수입품과 國산품 사이에 上述한 바와같이 價格이나 品質面에서 別差가 없는 경우에는 輸入品이라는 先入感때문에 수입품 아닌 國산품에 대하여 高價의 金額을 支拂하게 되어 수요자에게 被害를 주게 됨은 물론 一般需要者들의 輸入品需要가 增加되어 國內産業에 影響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 實際로 國內 有名百貨店에서 高級外製라 詐稱되는 國산품에 外國語商標를 붙여서 바가지 값으로 販賣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실은 周知된 바이다. 이러한 경우 外國의 저명상표(비록 그것이 가짜상표이기는 하지만)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國산품인 가짜 外製가 先入感的으로 國산보다 훨씬 高價으로 需要者의 눈에 잘못 나타나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登錄된 상표에 대하여서도 前述한 바와같이 상표권침해행위를 제대로 防止할 수 없는 現實下에서 수입품에 표시된 外國상표를 不正使用하는 행위를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면 一大混亂이 惹起될 것은 明若觀火하다. 筆者가 直接經驗한바를 한번 紹介하기로 한다. 石油煖爐를 사러가서 상인에게 어느상품이 더 좋은가 물었더니 實際品質은 N商標의 것이 좋으나 값은 F商標의 것이 더 비싸다고 말하기에 그 理由를 다시 물었더니 有名商標값이라고 對答하였다. 商標는 日本商標를 內國人이 讓受받은 登錄商標이다. 또 한가지는 衣類에 대하여 外國의 유명상표인 M商標를 S會社가 通常使用權을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M商標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상표가 시장에서多數發見된바 있어 그對策을論議한 바 있었다. 여기서難點이 들어난 것이 이들商標權侵害者들이 부정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1人當取扱品은數百枚程度에 不過한데 비하여商標權侵害行爲者의數가 엄청나게 많아서全體被害額은莫大하나 이들은 한꺼번에 고발하기 곤란하고 이들을 고발하고자 증거를 막상蒐集하려 하면 各個人으로 보아서는 고발해 보았자 그刑量은 매우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告發費用에 비하여 별로 效果의인 結果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대로 放置해 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結局은 少數百枚의 嚴罰主義를 取하기로 하였지만 이들 권리침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외국상표나 저명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은奢侈心에 들뜬 層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自己自身の處地를 타인에게 감추려는 虛榮내지 誇張된 心理의 所産이라고 보고 있다. 例컨데 外國商標M이 표시된 재킷을 입고 다니면 타인의 눈에는 그 사람이 마치 高價品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고 따라서 자기의 身分이 中富裕層에 屬하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貧民層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 보면 외래품이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국내에 흘러들어 오게 된다면 외제를 模倣한 가짜 외국상표가 표시된 부정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은 거의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3) 如何間 이와같은 紀憂속에서 또한가지 문제점을 되풀이 말하게 되는 바이지만 이들 부정상표의 洪水憂慮를 解決해줄 수 있는 處罰規定自體의 문제이기도 하다. 現行商標法 第60條의 刑事的 處罰規定에 따르면 商標권 침해행위자에 대하여서는 最高 5年의 徵役이나 最高 50萬圓의 罰金刑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63年 3月5日에 發効된 것이어서 벌써 15年이나 經過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僅만한 영세상인들의 商標권 침해행위는 大概 誹放되거나 고작 5만圓이하의 처벌정도밖에 當하지 않게 됨에 불과한 것이 지금까지의 常例인 것 같다. 그러나 이마저 이 규정은 登錄商標인 경우에만 該當된다. 그러므로 국내에 아직도 등록

되지 아니한 수입품의 外國商標를 國內인이 모방내지 盜用한 경우에는 不正競爭防止法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은 同法 第2條 第1號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어야 하고 第4號는 그 상품의 生産國以外的 곳에서 생산된듯이 誤認을 야기시키는 표시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第5號는 타인의 상품처럼 사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同法 第8條의 처벌규정에 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도 1961年 12월 30일, 그러니까 約 17年前에 발효된 것이다. 따라서 15년전에 制定된 處罰基準은 現實에 맞게 改正되어야만 부정상표의 根絶을 위하여 實効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② 外國商標使用과 그 問題點

外國商標使用이 許與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制限許可해오던 것을 좀더 緩化시켜 보겠다는 施策이 발진된 것으로 안다. 먼저 지금까지 허여되어온 外國著名商標의 國內企業使用으로 因한 문제점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예컨대 纖維類의 카시미론, 衣服類의 맥그리거, 石油燃焼器類의 후지카, 아이스크림類의 포모스트 등 이들 외국상표의 使用企業치고 그 기업이 크게 成功하지 않은 예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이들 外國著名商標使用企業의 성공은 相對的으로 同業者에게는 그만큼의 被害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 外國商標使用商品의 품질이 수요자에게 信任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水準級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他競爭業者의 商品品質도 相對적으로 向上되는 刺戟劑役割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上述한 外國商標表示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決코 그들이 外製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先進技術이 품질을 保障해 주고 있는 優秀國產品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으로부터서 政府가 外國商標의 使用을 擴大實施코저 意圖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外國商標使用이 그와같은 長點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裏面에는 他商標使用商品에 대한 疎外感과 外國商標表示商品에 대한 親密感이 無意識中에 수요자의 마음에 累積形成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상품에 대하여 外國商標表

示品만을 갖게되고 이것이 自然的으로 外來品崇拜의 心理로 變하기 쉽다. 그렇게되면 외국상표 표시품이 아닌 其他商標의 國產品製造 및 販賣業體에게는 너무나 큰 打撃과 被害를 입히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商標表示品은 그 商標著名稅에 해당하는 만큼의 價格引上을 하게되어 一般需要者의 負擔만 높힐뿐 아니라 競爭業體는 가격 덤핑으로 自減當할 우려까지 생길지 모른다.

한편 상술한 바와같이 시장에서는 惡德零細商人들에 의한 외국상표의 모방내지 盜用行爲가 盛行되어 商秩序의 紊亂은 물론 일반수요자에게 큰 피해도 줄 우려가 濃厚하다. 따라서 외국상표 사용의 擴大實施는 이와같은 面에 대한 대책을 併行實施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筆者가 平素 느끼던 바를 卽興으로 列舉함에 지나지 않으나 좀더 研究的 姿勢에서 檢討하여 보면 더 많고 더 深刻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思料된다.

끝으로 이와같은 문제점들에 關聯하여 筆者는 다음과 같은 意見을 提示하여 본다.

③ 輸入自由化와 外國商標使用擴大實施에 隨伴하는 商標法補完策

(1) 現行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 處罰規定을 현실에 맞도록 強化補完할 것. 즉 現行處罰規定은 15년전에 제정된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刑量이 輕微하여 犯法者가 自覺하지 않아 實效를 見을 수 없는 현실이다.

(2) 現行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 處罰規定範圍內에서 부정상표사용자에게는 최고의 刑罰에 처하도록 強力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상표사용을 근절시키도록 當局은 年中行事化해야 한다.

(3) 輸入自由化對象商品에 표시된 상표나 國지명상표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商標登錄을 받도록 義務化하여야 한다. 商標法 第65條에 雙罰規定이 있어 萬若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默認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外國商標權者들에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기상표의 事後管理責任까지 의무화시켜서 不正商標團束의 主役을 맞게하자는 것이다.

(4) 부정상표가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市場商人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법을 비롯한 工業所有權制度에 關한 常識의 啓蒙活動을 隨時로 퍼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이와같은 계몽활동이 正式으로 실시되어온 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官民合同으로 부정상표단속을 수시로 강력히 실시하여야 한다.

(6) 外國商標使用許可는 國內産業과 消費者保護의 테두리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創刊12年 / 定評있는 唯一한 韓國經濟의 總覽 /

韓國經濟年鑑

77年版

政策樹立, 企業經營, 國內外經濟分析,
經濟調查研究業務에 必須不可缺한 資料!

特輯: 韓國經濟政策30年

附錄: 財界人士錄
(4,000余人士收錄)

4×6倍版 1,400余面, 實費頒布価 10,000원

全國經濟人聯合會發刊
서울特別市 鍾路區 貴鉄洞 10
☎8853 ☎1090 ☎5317

— 39面에서 계속 —

④ 研究部署와의 協力

每月 1회씩 연구부서와의 相談日을 定하여 特許人員이 出張, 特許出願, 特許調査 등을 相議 協力한다.

企劃部署와 開發製品을 取扱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技術導入, 開發段階에서 필요에 따라 특허조사, 계약서의 작성 등에 협력한다.

9. 特許部員의 教育

특허실에 배치되는 者은 特許協會 主催 A·B코스에 參加시켜 연수를 받게하되 그후는 本人의 希望에 따라 每年 參加시킨다. 또한 필요에 따라 餘他 研修會에도 참가시키되 各 事業所에 배치된 特許連絡員은 採用과 同時에 A코스에 참가시킨다.

10. 社內 特許意識提高對策

每月報와 半年期末報告를 작성하여 全社員에게 配布하는 한편 特許制度의 變更時등 소식은 社內報에 掲載하고 各 事業소의 관계자들에게도 특허협회연구회에 참가를 勸誘한다. ♣